



2016년 스포츠산업단 부분감사 결과보고

- 감사기간 : 2016. 6. 9.(목)~6. 10.(금) / 2일간
- 대상기간 : 2014. 7. 1.~2016. 5. 30. / 2년간
- 지적사항 : 11건
 - 시정 4건, 주의 7건
 - 재정상 조치금액 : 2건, 838천 원(부과 830, 기타8)



스포츠산업단 부분감사 결과

I 총 평

- 각종 대회유치등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군민소득창출 연계를 위해 각종대회등을 외지에서 유치하는데 헌신노력하고 있으며, 군민 생활체육 확대와 군민체력 증진과 군민건강 배가를 위해 여성 등 소외계층 참여유도를 위해 생활체육을 군민 놀이문화로 확산시키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생활체육 활동으로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문화 풍토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저소득층 유소년 및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태권도등 5개 종목을 운영하여 유소년과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체력증진과 바른 인성함양에 기여하고 있음.

II 감사 결과

1. 처분요구 실적 : 11건

- 시정 4건, 주의 7건
- 재정상 조치금액 : 2건, 838천 원(부과 830, 기타8)

2. 지적사항 목록

(단위 : 건, 천원)

연번	분야	건 명	행정상 조치 (건)		재정상 조치 (천원)			비고
			시정	주의	계	회수	부과	
계		11건	4	7	838	0	830	8
1	일반업무	이자수입 미 불입	0		8			8
2	“	차량임차 계약체결 부적정		0				
3	“	연말예산 집행 부적정		0				
4	“	사무인계인수서 미 작성		0				
5	“	강진군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미 개정	0					
6	“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조치 소홀	0					
7	“	지역개발공채 매입기준 적용 소홀	0		830		830	
8	“	법인 신용카드 관리 소홀		0				
9	“	증빙서류의 원본주의 첨부문서 관리 소홀		0				
10	공사분야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구매 부적정		0				
11	“	풋살 경기장 인조잔디 철거 및 폐기물처리 원가계산 부적정		0				

Ⅲ 지적사항 요약

1. 이자수입 미불입

- 지방재정법 제65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의 규정에 의하면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토록 하여야 함에도 이자수입 3건의 8,100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불입하지 않았음

2. 차량임차 계약체결 부적정

- 스포츠산업단에서는 행사시 구급차 및 선수단 수송을 위하여 ○○회사등과 임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동법 [제5조1\)](#)와 [관광진흥법 제9조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하여야 했다.
- 따라서 동 차량들이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었는지 여부와 보험기간 도과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증서와 차량등록증 등을 제출토록 하여 이를 확인 후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이를 요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차량번호가 기재되지 않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동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가입 등)의 규정에 의하면 관광사업자는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이하 "보험 가입 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행사당일 계약서에 명시된 차량인지 확인하고 다른 계약차량이 아닐 경우 되돌려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만일의 사고에 대비 하였어야 하나, 스포츠 산업단에서는 상기와 같이 안전사고 대비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 종합보험증서 또는 공제보험증서, 차량등록증, 계약서 3종 필수
 - * 계약서에 반드시 차량번호가 기재된 계약서 작성

3. 사무인계인수서 미 작성

- 강진군사무인계인수 규칙 제2조의 규정³⁾에 의거 사무인계 인수서 작성할 대상으로는 군수,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소속기관의 장 및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강진군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지방세 부과징수 담당자,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과장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스포츠산업단에서는 단장은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 비치 하였으나 팀장은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지 않고 있다.

4. 연말예산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⁴⁾에 의하면 연초에 수립한 집행 계획을 분기별로 재검토하여 연말에 몰아서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토록 하였음에도 5건 2,917,600원을 연말에 몰아서 지출함.
 - * 각 실과소는 예산비목별 집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연말에 무분별한 예산 집행억제
 - * 연말에 무리한 집행잔액의 소진을 방지함으로써 재정의 건건성 및 집행의 균등화 도모

3) 강진군사무인계인수 규칙제2조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하며,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2013. 12. 31개정, 2014.1.1.시행, 행정자치부 예규 제9호, 2015.1.22.시행)지침

5. 강진군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미 개정

- 강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수영장의 이용)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영장 이용권은 회원권과 자유권으로 구분하며, 회원권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수영장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동 규칙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회원권 발급시 제5호 서식의 회원권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6호 서식 앞면에 영수증을 부착하고 물에 젖지 않도록 코팅 처리 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스포츠산업단에서는 '15.2.10.실내수영장 회원관리 시스템(라이트프로그램)을 금이백이십오만오천원(₩2,255,000)에 (주)○○정보시스템과 계약을 체결하여 회원권을 카드로 발급하고 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동 규칙 제3조2항의 규정⁵⁾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6.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조치 소홀

- 개별 행정시스템(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행정, 지방인사)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행정오류 사전방지 및 행정업무 효율화 지원을 위해 2014. 8월부터 운영중인 청백-e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담당자가 확인하여 조치 후 관리자는 조치내역에 대한 검토 및 승인 / 반려 처리를 하여야 한다.
- 스포츠산업단에서는 모니터링결과 발생건수 38건, 미처리건수 28건, 미승인건수 38건을 2016년 6월 감사일 현재까지 승인 받지 않는 등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5) 제1항에 따라 회원권 발급시 제5호 서식의 회원권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6호 서식 앞면에 영수증을 부착하고 물에 젖지 않도록 코팅 처리 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7. 지역개발공채 매입기준 적용 소홀

-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매입대상 및 기준)에 의거 1,000천 원 이상 공사 계약 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2.5 및 물품 구입 계약 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되, 산출결과 1건 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하여 매입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스포츠산업단에서는 지역개발공채를 12건에 대해서는 위의 규정에 따라 『물품구입(공사금액*0.015%) 및 (공사금액*0.025%)를 적용하여 매입』 하여야 하나 착오매입을 한 사실이 있음.

8. 법인신용카드 관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호)에 의거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함.
- 또한,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분임재무관까지 보고(결재) 하여야 함.
- 스포츠산업단에서는 신용카드 발급대장 및 사용대장을 작성 비치하지 않는 등 법인카드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9. 증빙서류의 원본주의 첨부서류 관리 소홀

- 강진군 재무회계 규칙 “제7장 계산증명” 제126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 1항에 의하면 원본에 부치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 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지출결의서 작성시 견적서등은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4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회계서류에 사본을 첨부하는 등 지출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0.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구매 부적정

- 스포츠산업단에서는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구입을 위해 2개 업체로부터 각각 1인 견적서를 제출받고 2개 업체와 6건을 견적가격으로 구입하였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⁶⁾을 준수하여 구입하여야 했다.
- 스포츠산업단에서는 조기집행과 이용객 의사 반영 등을 이유로 건당 5백만 원 이하의 가격으로 ○○○○상사와 4건, ○○스포츠 2건을 자체 수의계약 체결하여 집행하면서, ○○○○상사와 '16.3.25.(4,935천 원), '16.3.29.(2,450천 원) '16.3.31.(4,914천 원) 연속으로 구매계약 체결하는 등 부적정하게 구매한 사실이 있음

6)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의하여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 결정시에는 2개 이상업체의 견적가격 비교검토, 견적서내 자재비 및 노무비 단가가 적정한지 여부, 1인 견적에 의한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하게 시행하고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그 적절성을 검토 심사하여야 한다.

11. 풋살경기장 인조잔디 철거 및 폐기물처리 원가계산 부적정

- 스포츠산업단에서는 종합운동장 풋살경기장 정비를 위해 원가계산서(설계서)를 작성하여 원가계산 금액인 9,314천 원으로 ○○○○ ○○○와 계약·체결하여 사업추진 완료 후 계약금액 전액을 집행하였다.
- 각종 공사(용역)의 원가계산(설계서) 작성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안전행정부 예규)과 건설표준품셈 등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 위 사업(사업기간 1개월 이하, 1,000만원 미만)은 원가계산시 각종 보험료(건강보험료, 연금, 노인장기요양), 건설기계 대여금지급 보증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반영 제외 대상 사업임에도 원가계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있다.

Ⅲ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사항

1. 우수사례

① 보일러 교체를 통한 수영장 관리운영 비용 절감

【추진배경】

- 수영장 보일러 노후로 인하여 관리운영에 따른 유지비 증가와 안전 사고 발생우려 많았음.
- 보일러 교체 사업 추진이 시급하였으나 군정 재정의 열악함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있는 실정이었음
-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절감 효과 등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2015년 5월 국비 3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

【추진현황】

- 사업내용 : 노후 보일러 및 기계설비 교체 1식
- 사업비 : 3억(국비 3억)
- 사업기간 : 2015. 10. 22. ~ 2015. 12. 22.까지 / 2개월

【추진효과】

- 전기(기존 등유) 열원으로 수영장 수조를 가열하고 온도를 유지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기여
- 예산절감액 : 78,000천 원 / 년
 - * 사업 전 : 130,000천 원
 - * 사업 후 : 52,000천 원

② 보일러 교체를 통한 수영장 관리운영 비용 절감

【추진배경】

- 기존 수영장 입장시 회원권을 매일 제시해야 했으며, 하루 이용객 현황 파악 등 애로 사항이 있었음.
- 매달 이용기간이 끝난 경우 회원권을 다시 제작하여 회원들에게 재발부하는 등 시간 및 예산이 소요됨.
- 매일, 매달 등 수영장 이용고객들의 나이, 연령, 성별 등 이용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효율적 운영하기 위하여 전산 카드를 도입

【추진현황】

- 사업내용 : 전산 회원관리 시스템 설치
- 사업비 : 2,255천 원
- 사업기간 : 2015. 2. 9. ~ 2. 17.

【기대효과】

- 선진화된 회원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민원 최소화와 고객응대 기여
-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편리성 증대
- 매월 회원권 재발급 없이 이용기간 연장 전산화
- 수영장 이용객 현황 파악 및 회원관리 편리성 증대

2. 제도개선

▣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건의기관	강진군 스포츠산업단	소관부처	강진군
관련법령	강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개요	<p>□ 현 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3조(사용허가)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제10조(사용료 및 납부)에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사람은 초과시간당 전용료 기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기종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함. 연습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 매 초과 시간마다 해당시설에 대한 실내체육관 연습사용료의 50%를 가산 징수함. <p>□ 문 제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시책으로 학교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활동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강진군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음. <p>□ 개선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진군 조례에 사용료면제 기준을 마련. ○ 강진군 소재 각 학교장으로부터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 체육활동과 관련된 공공체육시설 사용 신청 시 사용료 감면. 		
검토의견			
건의결과			